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20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 11. 1.
4. 회부일자 : 2019. 11. 5.

II . 제안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조성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임

III .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53조

IV. 주요내용

1. 기금사업의 목표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의 신속·적정한 보상·지원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

- 총괄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교특회계 전입금	기부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용자성 사업비	인 력 운영비	기 본 경 비	예치금
14,451,797	350,002	1	6,639,688	104,995	7,357,111	14,451,797	8,395,394	1,291,445	375,276	4,389,682

※ 기 타 수 입: 공제료 수입 +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 수익사업(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 운영 수익금 +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 법인세 환급금 + 카드포인트 + 교육감판결금 정산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금

※ 비용자성사업비: 공제사업비 + 예방사업비 +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 + 학교폭력피해지원비 + 학교안심종합공제사업비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1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207호로 제출되어 2019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기금 총괄

-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87년 서울특별시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비롯해 17개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2020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조성규모는 43억 9천만원으로, 이는 2019년도 기금 조성액 66억 4천만원 보다 22억 5천만원(33.9%)이 감소한 것입니다.

[표-1] 2020년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2019년도말 조성액 ㉑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㉒=㉑+㉓-㉔	증감 ㉕=㉒-㉑
		수입㉓	지출㉔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	6,639,688	7,812,109	10,062,115	4,389,682	△2,250,006

나. 수입계획

-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액은 144억 5천 2백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 5천만원, 예치금회수 66억 4천만원, 이자수입 1억 5백만원, 공제료 등 기타수입 73억 5천 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억 5천 6백만원 (1.1%) 증가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신규 편성되고,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이 전년 대비 89.2%, 8.4%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1억 5천 6백만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낮은 증가율은 전년도 이월금이 8억 1천 7백만원(11.0%)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표-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항 목	세부내역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액	비율(%)
합 계		14,451,797	14,296,003	155,794	1.1
교특회계 전입금	소 계	350,002	0	350,002	0
	교원안심공제 공제료	200,000	0	200,000	0
	학생심리치료 공제료	150,000	0	150,000	0
	가스배상책임보험 공제료	1	0	1	0
	승강기배상책임보험 공제료	1	0	1	0
기부금	교육청교육금고 기부금	1	0	1	0
예치금회수	소 계	6,639,688	7,456,225	△816,537	△11.0
	학교안전공제기금 이월금	5,148,348	5,944,128	△795,780	△13.4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이월	86,620	0	86,620	0
	학교폭력피해지원금 이월	1,404,720	1,512,097	△107,377	△7.1
이자수입	이자수입	104,995	55,492	49,503	89.2
기타수입	소 계	7,357,111	6,784,286	572,825	8.4
	공제료 수입	6,938,912	6,281,885	657,027	10.5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24,342	60,197	△35,855	△59.6
	소방사업 수익	290,000	120,000	170,000	141.7
	학교폭력구상금 회수	94,765	50,000	44,765	89.5
	법인세 환급금	9,000	0	9,000	0
	카드포인트	90	0	90	0
	교육감판결금 정산	1	272,204	△272,203	△100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금	1	0	1	0

○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공제회가 교원안심공제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을 것을 추계한 것으로 수입금은 3억 5천만원이며, 교원안심공제 공제료 2억원과 학생심리치료 공제료 1억 5천만원, 가스배상책임보험 공제료 1천원, 승강기배상책임보험 공제료 1천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해당 사업들은 공제회가 학교에서 다양한 단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혼란 및 보상 청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해 있는 각종 보험 제도를 통합하여 수탁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이라는 항목에 예산

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예산은 금번 제출된 서울시교육청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당사업이 공제회에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회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지원여부 및 공제회의 사업 수행 가능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들에 대한 수입계획을 편성한 것은 기금수입의 계획성 및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예치금 회수'는 동 기금의 전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의 차이에 따른 이월금으로 수입액은 66억 4천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치금 74억 5천 6백만원 대비 11%(8억 1천 7백만원)가 감소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예치금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79억 6천 6백만원, 2018년 58억 6천 9백만원, 2019년 68억 4천만원으로 지난 3년간 기금조성 총액은 204억 7천 5백만원이며, 이는 연평균 68억 9천만원 수준입니다.

-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공제기금 지출액은 총 246억 2천 7백만원으로 연평균 82억 9백만원에 달해 기금 조성액 대비 공제기금 지출액 수지는 연평균 13억 1천 7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공제로 수입과 소방사업 수익 등 실제 수입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적자가 2018년도부터 매년 20억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현 추세대로라면 기금 고갈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중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차이
	금액	증감	증감률	금액	증감	증감률	
2017	7,966	1,996	33.4	6,971	662	10.5	995
2018	5,869	△2,097	△26.3	7,897	926	13.3	△2,028
2019	6,840	971	16.5	9,759	1,862	23.6	△2,919
2020	7,812	972	14.2	10,062	303	3.1	△2,250

- 다음으로 이자수입은 1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5천 5백만원 대비 89.2%(5천만원)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증가는 만기일이 도래하는 금융상품이 내년에 2건 발생함에 따른 수입증대입니다.
- 마지막으로 공제료 수입 및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소방사업수익, 학교폭력피해구상금 등 사실상 공제회의 주된 수입원인 기타수입은 73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65억 1천 2백만원 대비 11.5%(8억 4천 5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이는 공제료 수입과 소방사업수입이 각각 10.5%, 141.7%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 공제료 수입은 69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천 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공제료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¹⁾에 따른 학생수 추계로 산정된 것이며,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른 수입액의 편성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

1)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1호)

구분	2019년 공제료(원)	2020년 기준공제료(원)	2020년 기준공제료 10%가산금액(원)
유치원	2,150	2,300	2,530
초등학교	3,800	4,000	4,400
중학교	7,600	8,500	9,350
고등학교	9,400	10,500	11,550

각 시·도공제회는 시·도별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10% 이내 조정할 수 있다.

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는 교육 활동 참여자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및 질병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59.6%인 3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공제료 지원 산출기준인 교육활동참여자 지급건수와 보상액이 감소함에 따른 감액으로 이 역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소방시설점검²⁾에 대한 사업수익금은 2억 9천만원으로, 이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1억 2천만원이었던 수익금 대비 141.7% 증가하였는바, 이는 수수료 단가 인상(약 50%)과 계약학교 수 증가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표-4] 소방수익 계약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약학교 수	증가수	수입금	이월금
2018년	476		120,000	153,506천원
2019년	534	58개교 증가	120,000	252,947천원
2020년(예상)	550	16개교 증가	290,000	74,479천원

- 한편 표2의 기타수입금 중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은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천 2백만원 전액 감액되었는바, 학교안전공제회가 11월말에 교육청에 정산을 요청하면 교육청은 이를 자체검토 후 지급액을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입니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따라서 동 사업은 금액의 범위가 매우 유동적이고 이로 인해 학교안전 공제회가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정확히 추계할 수 없어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지출계획

○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지출액은 사업비 중 공제사업비 72억 2천 7백만원과 예방사업비 4억 8천 9백만원 등 77억 1천 6백만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7천 1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비 2억 5천 4백만원, 기관운영비 16억 6천 7백만원, 차기 이월금 43억 9천만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5천 5백만원(1.1%) 증가한 144억 5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5] 2019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주요항목		지출계획안		증 감		
		2020년도 (A)	2019년도(B)	증감액(A-B)	비율	
사업비	공제사업	공제급여 지급	6,849,000	6,820,000	29,000	0.4
		전문가 자문위탁	39,600	0	39,600	0
		보상심사위원회	25,200	52,600	△27,400	△52.1
		소송업무 수행	164,440	432,084	△267,644	△62.0
		손해방지및긴급조치 비용지원	41,500	82,500	△41,000	△49.7
		판결금 지원	50,000	0	50,000	0
		중앙회 분담금	57,000	0	57,000	0
	예방사업	488,783	605,030	△116,247	△19.2	
	소 계	7,715,523	7,992,214	△276,691	△3.5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71,440	71,380	60	0.1	
학교폭력피해지원		254,469	112,479	141,990	126.2	

학교안심종합공제		353,962	0	353,962	0
기관운영비	인건비	1,291,445	1,165,061	126,384	10.8
	업무추진비	23,960	33,680	△9,720	△28.9
	일반운영비	351,316	384,012	△32,696	△8.5
	소 계	1,666,721	1,582,753	83,968	5.3
차기이월금	보유준비금	3,128,385	2,991,421	136,964	4.6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금	15,281	86,620	△71,339	△82.4
	학교폭력피해 지원금	1,246,016	1,459,136	△213,120	△14.6
	소 계	4,389,682	4,537,177	△147,495	△3.3
합계		14,451,797	14,296,003	155,794	1.1

○ 지출액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소송업무 수행 및 예방사업 등 사업비 지출이 전년도 79억 9천 2백만원에서 77억 1천 6백만원으로 3.5% 감소(2억 7천 7백만원)하였고, 차기 이월금이 전년도 45억 3천 7백만원에서 43억 9천만원으로 감소(1억 4천 7백만원, 3.3%)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차기 이월금을 제외하면 2020년도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지출액은 전년 대비 3억 3백만원 증가된 100억 6천 2백만원(3.0%)으로, 공제사업비 중 ‘전문가 자문위탁’ 4천만원과 ‘중앙회 분담금’ 5천 7백만원 등 9천 7백만원, ‘학교안심종합공제’ 3억 5천 4백만원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지출액이 추가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표-6] 2020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중 신규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기존 고유 사업	학교 안전사고 보상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	학교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	학교안전법 제10조의 3

		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학교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2의 2호
신규 사업	교원 안심공 제	교원손해배상금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분쟁조정, 소송대행 및 지원, 보상관련 각종 행정업무 대행도 포함)
		교원소송비용 지원	교원의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 지도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교원 심리상담 치료	학생, 학부모, 동료 교직원 등의 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교원 위험대처 보호	교원의 직무수행 시 난입, 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요 등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출동
	학생심리치료비집행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 등에 대한 심리치료 보상
	교직원 온라인상담창구		교직원에 대한 온라인 상담을 위한 자문료
	학교시설 배상책임 보험	가스시설 사고 (의무보험)	학교 내 가스시설 관련사고 손해배상금 보상
		승강기 사고 (의무보험)	학교 내 승강기사고 손해배상금 보상(교육 활동 시간 외)

- 먼저 공제사업 중 ‘전문가 자문 위탁’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시 책임 및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바, 외부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자격자가 자문을 통해 장해·유족급여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제제도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중앙회 분담금’은 종전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중앙회 분담금 비용이 ‘공제사업’으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으로 학교안심종합공제사업은 교원안심공제 2억원, 학생심리치료비 집행 1억 5천만원, 교직원 온라인상담청구 4백만원 및 학교시설배

상책임보험 2천원 등 3억 5천 4백만원이 새롭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러나 공제회의 사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18조³⁾에 열거된 사업에 한해 추진하여야 하는 바,

추가적으로 추진하려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학생심리치료비집행, 학교 시설배상책임보험 등의 신규 사업들은 사업의 내용이 학교안전법에 해당하는지가 선결요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신규 사업들이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⁴⁾해 놓은 상황입니다.

- 참고로 교육부 법령해석 요청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법률자문 결과 신규 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바,

서울시교육청과 공제회는 신규 사업 도입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23882

관계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공제회의 재정)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로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5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